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에 신종위험 예방·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,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24. ~ 3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21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복권기금 전입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에 관한 승인 및 관리

19의2.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·지도

제22조제3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7.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별표 1 중 총계 “1,649”를 “1,65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07”을 “1,61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“1,538”을 “1,54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디지털정부국) ①·② (생략)	제13조(디지털정부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20. (생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21.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지원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22. ~ 62. (생략)	22. ~ 6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지방재정경제실) ①·② (생략)	제15조(지방재정경제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9.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·지도</u>	<u>9. 복권기금 전입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에 관한 승인 및 관리</u>
10. ~ 19. (생략)	10. ~ 1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9의2.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·지도</u>
20. ~ 57. (생략)	20. ~ 57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안전정책실) ①·② (생략)	제22조(안전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

다. 1. ~ 26. (생략) <u><신설></u> 30. ~ 53. (생략)	--. 1. ~ 26. (현행과 같음) <u>27.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0. ~ 53.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49</u>	<u>1,655</u>	+6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607</u>	<u>1,613</u>	+6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	<u>1,538</u>	<u>1,544</u>	+6
·	·	·	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0